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5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월 21일(목) 오후 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5. 21(목)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담당과장	장수철 과장(044-203-5880) 한상덕 과장(044-203-5860)	담 당 자	조호정 사무관(044-203-5888) (양말편직기계) 백인배 사무관(044-203-5886) (피부용 의료기기) 송병철 사무관(044-203-5861) (일본산 공기압밸브)

무역위원회,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건은 비침해 판정,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세계무역기구 판정 이행보고서」 채택

- 제400차 무역위원회 개최('20.5.21.) -

□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5.21.(목) 제400차 회의를 개최하여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및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함

□ 위원회는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및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에 따른 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에 대해서 약 8~10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

○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社가 작년 8월 조사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 위원회는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피신청인 '가'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함

-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또한,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

- 위원회는 피신청인 '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여 사업을 준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피신청인 '나'의 조사대상물품 제조·수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선사용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 선사용자의 사업 설비 등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특허법상 인정되는 권리**임

- 특히, 위원회는 동건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특허출원 시점에서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였음을 밝혀냈음

* 피신청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여 사업 준비한 자에 해당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인정

- 작년 7월 특허권자인 ㈜비올은 자사의 '피부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물품을 국내 기업 '나'가 제조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하였다며 조사 신청한 바 있음

□ 한편,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함에 따라 WTO 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쟁점에서 승소함('19.9.10)

*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제품 등에 사용.
- 국내시장 규모('13) : 647억원(국내산 비중 23%(148억원), 일본산 비중 73%(472억원))

** '15.8월부터 5년간('15.8.19.~'20.8.18.) 日 SMC社에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 부과

○ 다만, 상소기구 판정 결과 日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협의를 통하여 우리측이 '19.9월~'20.5월간 이행하기로 합의

* ①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②비밀정보 취급사유 요구, ③충분한 공개요약문 요구

○ 이에 무역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이행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음

* ①가격 비교방법을 보완하여 국내산보다 고가인 일본산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 ②국내생산자로부터 비밀정보 취급사유 및 충분한 공개요약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였음

-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산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음

○ 금번에 무역위원회가 채택한 이행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되어 공고될 예정임

□ 위원회 무역조사실 관계자는 "덤핑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최소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 더욱 많은 기업들이 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힘

* 덤핑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무역조사과 조호정 사무관(☎ 044-203-5888), 백인배 사무관(☎ 044-203-5886), 산업피해조사과 송병철 사무관(☎ 044-203-58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신청인)**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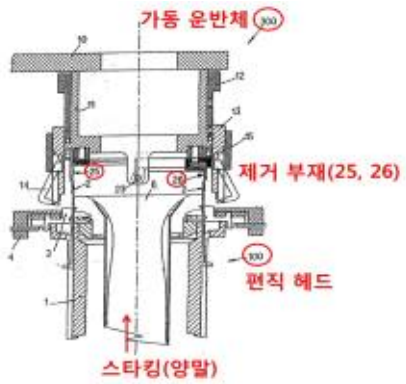
○ **(피신청인)** 국내 개인사업자 가

○ **(조사대상물품)** 양말편직기계

○ (특허권) '관모양 편직물의 변부를 연결하는 방법 및 장치'로(특허 제1068371호), 양말의 변부를 봉합하여 양말 완제품을 제조

* (출원일) '03.10.17., (등록일) '11.09.21., (존속기간만료일) '23.10.17.

< 특허발명의 대표 도면 >



< 조사대상물품 이미지 >



○ **(신청이유)**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이 **수입 및 국내 판매**

□ 조사결과 주요 내용 (관세청 통관자료 확인, 서면조사, 현지조사 실시)

○ **(특허권)** 해당 권리는 유효하며, 신청인은 특허 전용실시권 계약자

- 조사대상물품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므로 특허권을 침해

○ **(수입 및 판매)**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 및 국내 판매한 사실 확인

⇒ 피신청인이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됨

□ 판정 및 후속조치

○ 피신청인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해당 결정(제400차 무역위, '20.5.21.)

* 제재조치(안) : 시정명령(수입 및 판매 중지, 시정명령공표)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붙임 2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신청인) ㈜비올(대표이사 : 이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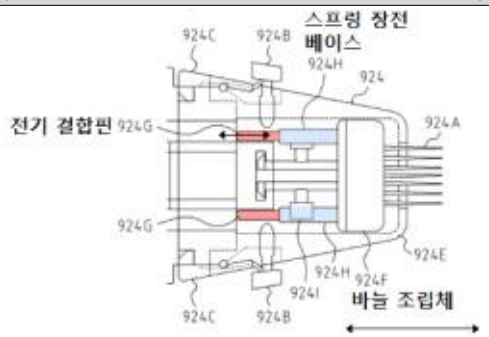
○ (피신청인) 국내 사업자 나

○ (조사대상물품) 피부용 의료기기

○ (특허권) '피부 미용방법, 미용기 및 미용 시스템'으로(특허 제1363000호), 피부 조직 내에 전기 자극을 주어 피부 재생 촉진

* (출원일) '12.2.22., (등록일) '14.2.7., (존속기간만료일) '32.2.22.

○ (신청이유)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이 제조하여 수출

신청인 특허 (피부용 의료기기의 바늘조립체)	조사대상물품 (마이크로 니들팁)
	

□ 조사 경과

○ 조사신청서 접수('19.7.11.), 조사개시결정('19.7.29.)

○ 서면조사('19.7~'20.5월), 양 당사자 현지조사('20.2월, 3월)

○ 전문가 감정 의뢰('20.3월), 디지털 포렌식 조사('20.4월),

□ 조사 결과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여 사업 준비한 자에 해당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인정

⇒ 피신청인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인정에 따라 조사대상물품 제조·수출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붙임 3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분쟁 경과

○ ‘15.1.20. 무역위, 일본산 밸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

* ‘14.2.21 조사개시/ ’14.6.26 예비판정/ ‘14.10.23 공청회

○ ‘15.8.19. 기재부,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15.8.19~‘20.8.18)

○ ‘16.3.15. 일본 정부, WTO 제소

○ ‘16.4.28. 양자협의 진행

○ ‘16.6.9. 일측, WTO 패널 설치 요청

○ ’16.7.4. 패널 설치

○ ‘16.8.29. 패널 구성

○ ‘17.3.1~2. 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 ‘17.5.30~31. 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 ‘18.4.12. 패널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18.5.28. 일측,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4~5. 상소심 구두심리 회의 개최

○ ‘19.9.10. 상소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19.11.14 일본측과 이행기간(8개월) 합의(’19.9.30~’20.5.30)

참고 1 **WTO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요지**

쟁점		순번	쟁점, 패널, 상소 판정	패널	상소
실체적 쟁점	**가격효과** (3.1, 3.2조)	1	**(쟁점)** 덤핑수입의 국내 동종상품에 대한 가격인하 혹은 인상억제 등 영향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상소) 가격비교방법 부적절, 고가판매와 가격인하간의 합리적 설명 부족**	**승소**	부분 번복
	물량효과 (3.1, 3.2조)	2	**(쟁점)** 덤핑수입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증가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상소) 심사 완료 불가**	**승소**	**유지**
	국내산업 범위 (3.1, 4.1조)	3	**(쟁점)** 국내산업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했는지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상소) 심사 완료 불가**	**승소**	**유지**
	국내산업 피해 (3.1, 3.4조)	4	**(쟁점)** 피해분석이 객관, 타당했는지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상소) 심사 완료 불가**	**승소**	**유지**
		5	**(쟁점)** 자금조달 능력, 덤핑마진의 크기를 적절히 고려했는지 여부 **(패널)** 적절히 고려 **(상소) 패널 판정 유지**	**승소**	**유지**
	인과관계 (3.1, 3.5조)	6	**(쟁점)** 덤핑 이외에 산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 검토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승소**	不상소
		7	**(쟁점)** 인과관계 분석時 가격효과 등 별도심사 가능 여부 **(패널)** 별도심사가 가능하며, 이에 근거한 가격비교방법상 흠결로 인해 협정 비합치 **(상소) 별도 심사는 부적절하며, 따라서 비합치 판정도 번복**	패소	**번복 (승소)**
		8	**(쟁점)** 덤핑의 효과를 통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판정이 객관, 타당한지 여부 **(패널)** 상기 인과관계 판정이 협정위반이라는 근거 없음. **(상소) 패널 판정 유지**	**승소**	**유지**
		9	**(쟁점)** 덤핑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걸러냈는지 여부 **(패널)** 덤핑 이외 요인에 기인한 피해를 걸러내지 못했음을 일본이 입증 못함. **(상소) 패널 판정 유지**	**승소**	**유지**
절차적 쟁점	**비밀정보 처리** (6.5조)	10	**(쟁점)** 비밀정보 분류요청시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제시 여부 **(패널)**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정보로 처리한 것은 협정위반 **(상소) 패널 판정 유지**	패소	유지
	공개요약본 정보수준 (6.5.1조)	11	**(쟁점)** 기업의 자료제출 시, 그 자체로도 이해가능한 공개요약본 제출의무 이행 여부 **(패널)** 충분한 공개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아 협정위반 **(상소) 패널 판정 유지**	패소	유지
	핵심적사실 통보 (6.9조)	12	**(쟁점)** 판정의 근거가 된 핵심적인 사실을 최종 판정(무역위 최종의결시) 이전에 당사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패널) 심사 완료 불가**	**승소**	**유지**
	최종판정에 대한 공고 (12.2, 12.2.2조)	13	**(쟁점)** 최종판정에 대한 적절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승소**	不상소

참고 2 WTO 분쟁절차도

